

2015년 06월 25일(목)

# 고 수 면 이 장 회 의 자 료



## 고 수 면



## 총무팀

지방세:임설림(8153)    사업·상하수도:이문규(8152)  
보 건:김순남(8156)    동향·민방위:박경태(8151)

### □ 각종 사건·사고 등 동향보고 협조

- 대 상 : 각종 사건사고 여론동향 미담사례 등
- 협조사항 : 동향 발생시 면사무소에 즉시 연락요망

### □ 도난사고 빈발 주의요청

- 교량난간, 농산물, 비료 등 고수면 도난사고가 잦음
- 인적이 드문 곳의 각종 적치물에 대한 주의 필요
-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및 주의 당부
- 수상한 사람 발견 시 고수치안센터(562-0112) 혹은 면사무소 신고

###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 년 중
- 대상재해 : 태풍, 강풍, 홍수, 호우, 해일, 풍랑, 대설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품유형
  - 주택(보험기간 1년, 일시납원칙) : 주택법제2조 주거용 건물  
※ 제외 : 건축물대장 등재되지 않은 건물, 부속건물(창고,외양간 등)
  -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제외 : 100㎡미만의 온실, 농·임업용 이외의 온실

### □ 가로등 고장 신고처 홍보

- 신고처 : 고창군청 가로등 보수팀 ☎ 560-2418  
※ 군청으로 고장신고 하시면 더욱 신속히 수리 됨.
- 신고내용 : 가로등 관리번호(예시 : 고수면 상평리 011) 및 고장내용

## □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홍보

- 의의 :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기반 강화
- 기간 : 2015. 6월 ~ 11월(6개월간)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면제 후 양성화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방안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

## □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결정·공시일 : 2015. 5. 29.
- 결정·공시사항 : 2015. 1. 1.기준 토지 지번별 m<sup>2</sup>당 가격
- 이의신청기간 : 2015. 5. 29 ~ 6. 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종합민원과(560-2422), 해리면사무소(560-8301)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열람사이트 : 고창군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http://www.kreic.org/realtyprice))

#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5. 06월 ~ 2015. 11월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않았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
- 신고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신고대장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허가시설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시설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 신고자 혜택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양성화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면제후 양성화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방안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수해마루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홍보

- 운영일 : 매주 월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 6시 (토요일 09:00 ~ 15:00)
- 위치 : 고수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1층
- 도서대여 : 1인 1회 3권(대여기간 10일, 연장 5일 가능)
- 보유도서 : 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문학,역사류

## □ 201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부과현황 : 923건 93,051천 원
-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상 6월1일 현재소유자
- 납부기간 : 2015.6.16. ~ 6.30.(15일간)
- 납부방법  
: 모든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
- 문의하실곳 : 고수면사무소 ☎(063)560-8153

## □ 지방세 온라인 납부 방식 안내

- 목적 :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CD/ATM기: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
- 자동이체신청 : 모든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
-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 가능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가능
- 문의하실곳 : 고수면사무소 ☎ (063)560-8153 임설림

## □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재개 홍보

- 목적 :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연관람시 문화누리카드 카드 사용
- 기간 : 2015.6.27. ~ 9.19.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 고창읍성 한옥마을 도예체험장 앞마당
- 입장료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3,000원(일반 10,000원)
- 내용 : 동리신재효와 진채선의 사랑이야기를 풍물과 소리로 표현

## □ 2015년 치매 조기검진 실시

- 검사대상 : 60세 이상 주민 중 희망자
- 검사시기 : 연중
- 검사장소 : 보건소, 면사무소 보건담당(각 마을 경로당)
- 치매검사방법 : 치매선별검사 후 필요시 정밀검사 후 투약실시
- 문의전화 : 560-8156

## □ 만60세 이상 주민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 접종대상 : 60세 이상 주민 중 미접종자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 접종시기 : 연중
- 접종장소 : 보건소, 고수보건지소
- 접종시간 : 평일 오전중(09:00~12:00)
- 문의전화 : 560-8168

## □ 2015년도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

- 기 간 : 2015. 6월 ~ 9월 (4개월간)
- 장 소 : 36개 마을(관광행락지, 축사밀집지역, 하천 등 포함)
- 동원현황 : 방역차량 1대, 소독요원 1명
- 추진방법
  - 매주(월~토요일) 마을 일정별 소독실시 (시간:18:00~21:00)
  - 양잠 및 양봉지역 방역소독 제외
  - 오디 및 복분자 수확철 선별 소독실시
  - 마을 취약지 및 태풍, 폭우 등 피해발생시 수시 실시
- 마을별 일정표

요 일	소 독 지 역
월	와촌, 농공단지, 봉산, 우평, 학골, 양지, 잠곡, 남산, 취성, 마당바우
화	복용, 조산, 두평, 구암, 용두, 은사, 신기(문수사, 신기계곡)
수	예지, 지촌, 고성촌, 위성, 인동, 학산, 오산
목	장두, 월계, 쓰레기분리장, 장암, 부곡, 남고창IC
금	황산, 예촌, 문화, 성산, 평촌, 상평, 증산, 강촌, 공판동
토	초내, 내창, 평지, 청계, 연동

## □ 2015년 앵속(양귀비) 및 대마 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5년 5월 ~ 7월
- 단속기관 : 고창보건소와 정읍지청 합동단속
- 단속대상 : 앵속·대마 밀경작 및 밀매자
- 단속방법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밀경작 장소 단속

## □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예방주의

- 정 의 :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증상과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함.
- 잠복기 : 진드기에 물린 뒤 6~14일
- 증 상 : 발열,구토,설사,복통,두통, 근육통,신경증상 등
- 치 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실시
- 감염경로 : 작은소참진드기 등의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 예방수칙 : ①4월과 10월 사이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②풀숲 등에 갈 때는 보호장구 착용(긴옷,장화,장갑)  
③야외활동 후 옷 꼼꼼히 털고 목욕을 생활화하기.  
④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  
⑤발열,구토,설사,두통 등 증상 있으면 병원방문  
⑥중동지역 여행 후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
- 접종시간 : 평일 오전중(09:00~12:00)
- 문의전화 : 560-8168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예방주의

- 정 의 : 사우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지속 발생중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 잠복기 : 5일(2일~14일)
- 증 상 : 38℃ 이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쁨 등
- 치 료 :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실시
- 감염경로 : 중동지역 여행 및 근무로 낙타관련 접촉사례
- 예방수칙 : ①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②중동지역여행 중 낙타 등 접촉 삼가기.  
 ③기침,재치기 시 손수건으로 입,코가리기.  
 ④사람 많은 장소 방문 자제.  
 ⑤발열,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있으면 병원방문  
 ⑥중동지역 여행 후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 및 병원에서 치료하기.

### 메르스 관련 전라북도내 「국민안심병원」 리스트

연번	소재지	요양기관명	시행일자	병원종별	비고
190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6.15(월)	상급종합병원	1차
191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병원	6.15(월)*	상급종합병원	1차
192	전북 군산시	동군산병원	6.15(월)	종합병원	1차
193	전북 부안군	부안성모병원	6.15(월)	종합병원	1차
194	전북 고창군	고창병원	6.16(화)	종합병원	2차
195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유지재단전주 예수병원	6.16(화)	종합병원	2차
196	전북 익산시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6.19(금)	종합병원	3차
197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6.19(금)	종합병원	3차
198	전북 전주시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6.19(금)	종합병원	3차
199	전북 전주시	전주열린병원	6.15(월)	병원	1차
200	전북 전주시	대자인병원	6.23(화)	병원	3차
201	전북 정읍시	정읍사랑병원	6.19(금)	병원	3차

## 비브리오패혈증 증상 및 예방법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2000년에 법정감염병(제3군) 지정(ICD-10 A05.8) 인구 1백만 명당 1명 발생(※미국 : 1백만 명당 5명 발생)
주요 병원균	<i>Vibrio vulnificus</i>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
감염경로	섭취 :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 혹은 덜 익힌 상태로 섭취 접촉 : 오염된 해수가 상처부위를 통해 침입
잠 복 기	12 ~ 72시간
임상경과	신속한 치료가 없을 경우 임상경과가 빠름 치사율 : 50% 이상
주요증상 및 징후	0 발열 :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생, 저혈압, 쇼크 혈소판감소, 파종성혈관내응고(DIC) 0 피부병변 : 주로 하지에서 시작.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 으로 진행 ※특징적 피부병변: 수포성 괴사
진 단	검체(혈액, 피부병변, 대변 등)에서 균 분리 동정
치 료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등 적절한 항생제 치료 적극적인 병변절제(debridement)
환자 및 접촉자 관 리	환자격리 : 필요 없음 접촉자격리 : 필요 없음
예 방	0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아야 함 ※고위험군 :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암, 간경화 등), 알코올중독혈색소 증(hematochromatosis), AIDS 등 면역저하자 0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함 0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85℃ 이상 가열처리,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0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

#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

## 우리군 경기일정

### 대회 개요

- 대회기간 : ' 15. 7. 3 ~ 7. 14(12일간)
- 장 소 : 70개 경기장·훈련장(광주 45, 전남·북 25)
- 참가규모 : 170여국 20,000여명(선수·임원 14,000, 심판·운영진 6,000)
- 경기종목 : 21개 종목(정식 13, 선택 8), 272개 세부종목
  - 정식 종목 : 기계체조/농구/다이빙/리듬체조/배구/수구/수영/유도/육상/축구/탁구/테니스/펜싱
  - 선택 종목 : 골프/배드민턴/사격/야구/양궁/조정/태권도/핸드볼

### 경기 개요

#### ■ 축구종목

- 기 간 : 7. 2 ~ 7. 13(12일간)
- 장 소 : 고창공설운동장외 7개 구장 \*경기장8, 훈련장6
- 규 모 : 21개국 32팀(남16, 여16)
- 경기방식 : 예선 → 조별리그, 본선 → 풀 랭킹 토너먼트
- 우리군 일정 : 5일간, 10매치(남자)

장 소	일 자	시간	경기번호	대 진	비고
고창공설운동장	7.2(목)	11:00	M4	아일랜드 vs 우루과이	조별예선
		16:30	M8	말레이시아 vs 브라질	조별예선
	7.5(일)	11:00	M12	우크라이나 vs 남아공	조별예선
		16:30	M16	캐나다 vs 대만	조별예선
	7.7(화)	11:00	M20	브라질 vs 이란	조별예선
		16:30	M24	우루과이 vs 중국	조별예선
	7.9(목)	11:00	M28	A조3위 vs D조4위	9~16위팀
		16:30	M32	D조3위 vs A조4위	8강전
	7.11(토)	11:00	M36	M27패 vs M28패	13~16위팀
		16:30	M40	M31패 vs M32패	13~16위팀

## ▣ 핸드볼 종목

- 기 간 : 7. 6 ~ 7. 13(8일간)
- 장 소 : 고창군립체육관외 2개 체육관 \*경기장3, 훈련장3
- 규 모 : 21개국 28팀(남14, 여14)
- 경기방식 : 예선 → 조별리그, 본선 → 풀 랭킹 토너먼트
- 우리군 일정 : 6일간, 24매치(남,여)

장 소	일 자	시간	경기번호	대 진	비고
고창군립체육관	7.6(월)	14:00	W01	일본 vs 우크라이나	
		16:00	W02	대한민국 vs 중국	여자
		18:00	M03	포르투갈 vs 일본	
		20:00	M06	러시아 vs 리투아니아	
	7.7(화)	14:00	W12	세르비아 vs 몬테네그로	
		16:00	W11	우루과이 vs 헝가리	
		18:00	M07	멕시코 vs 세르비아	
		20:00	M08	대한민국 vs 미국	남자
	7.9(목)	14:00	W15	슬로바키아 vs 북한	여자
		16:00	W16	브라질 vs 체코	
		18:00	M16	스위스 vs 이스라엘	
		20:00	M17	브라질 vs 헝가리	
	7.10(금)	14:00	W20	1B vs 2A	
		16:00	W22	1D vs 2C	
		18:00	M20	1B vs 2A	
		20:00	M22	1D vs 2C	
	7.12(일)	14:00	W25	L19 vs L21	5~8위전
		16:00	W26	L20 vs L22	5~8위전
		18:00	M25	L19 vs L21	5~8위전
		20:00	M26	L20 vs L22	5~8위전
	7.13(월)	10:00	W33	2Y vs 2X	11~12위
		12:00	W35	W25 vs W26	5~6위전
		14:00	M33	1Y vs 1X	9~10위
		16:00	M32	2Y vs 2X	11~12위

○ 우리군 훈련장(군립체육관) 사용일정

**\* 각 국가별 신청에 따른 변동 가능성 있음.**

일자	시간대별	배정조	비 고
7. 1(수)	10:20~11:30	B1(W)	여자
	11:40~12:50	B2(W)	
	13:00~14:10	B3(W)	
	14:20~15:30	B4(W)	
	15:40~16:50	D3(W)	
7. 2(목)	10:20~11:30	B1	남자
	11:40~12:50	B2	
	13:00~14:10	B3	
	14:20~15:30	D2	
	15:40~16:50	D3	
7. 4(토)	10:20~11:30	B1(W)	여자
	11:40~12:50	B2(W)	
	13:00~14:10	B3(W)	
	14:20~15:30	B4(W)	
	15:40~16:50	D3(W)	
7. 5(일)	10:20~11:30	B1	남자
	11:40~12:50	B2	
	13:00~14:10	B3	
	14:20~15:30	D2	
	15:40~16:50	D2	
7. 8(수)	10:20~11:30	B1	남자
	11:40~12:50	B2	
	13:00~14:10	B3	
	14:20~15:30	D2	
	15:40~16:50	D3	
7. 11(토)	10:20~11:30	B1(W)	여자
	11:40~12:50	B2(W)	
	13:00~14:10	B3(W)	
	14:20~15:30	B4(W)	
	15:40~16:50	D3(W)	

**☞ 선수 신변보호와 팀 이탈 등을 대비하여 관람객에게 개방없이 훈련예정**

## □ 광주하계U대회 대비 마을 대청소

○ 추진기간 : ~ 2015. 6. 30.

※ 대회기간 : 2015. 7. 3.~ 7. 14.(12일간)

○ 추진방법 : 각 마을 자체적으로 대청소 실시

분리수거 철저, 농업용 폐기물 무단 투기 금지 등

## □ 경로당 3/4분기 운영보조금 및 한시냉방비 지급

○ 대 상 : 관내 38개 등록경로당

○ 지원금액 : 운영보조금 - 경로당별 회원수따라 차등지급

한시냉방비 - 경로당별 100,000원

※ 보조금 수입·지출 내역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1월,7월)

○ 사용방법 : 목적외 사용 금지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 (간이영수증 사용분 반납)

※ 목적 외 사용의 예

1.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관광 및 여행을 실시한 경우

2.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단체 및 마을단위 회식을 한 경우

3. 경로당 운영보조금으로 마을 경조사비 납부 등

4. 기타 경로당 운영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비용 지출의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안내문 붙임)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및 전화로 상담 후 신청

- 상담을 통해 급여별 신청서류 안내

# 수급자분들께 7월부터 맞춤형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 가정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이번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로 새로워집니다.

-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 급여 수준은 늘어나고, 최소한 기존에 받으시던 급여만큼은 앞으로 도 계속 드립니다.
  - 기존에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액수)은 대부분 늘어납니다. 일부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기존 현금급여보다 모자란 만큼을 채워 드립니다.(이행기 보전액)
  - 그동안 현금급여 없이 의료급여만 받던 수급자분들도 주거급여 기준이 확대되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창군청 통합조사담당자 : 063-560-2281		
◇ 읍.면 주민복지담당자 : 063-560-8154		
<b>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b>	<b>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b>	<b>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b>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6. 29일 이후 개통예정

2015. 6. 30.

## 고 창 군 수

## □ 2015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 연장

- 신청기한 : 2015. 3. 2 ~ 7. 10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자로 경영체등록필지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가장넓은 읍·면사무소임
- 주요 변경사항
  - 신규진입요건 완화
  - 승계대상 대상 및 범위 확대 등

###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안 : 1,076,416원/ha(평당 약 355원)
- 농업진흥지역밖 : 807,312원/ha(평당 약 266원)

※ 2015년 미신청자 신청 독려 : 명단 별첨

## □ 2015년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연장

- 신청기한 : 2015. 3. 2 ~ 7. 10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에 등록한자로 경영체등록필지에 한함
- 신청장소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 농지소재지의 범위는 직불금 신청면적이 가장넓은 읍·면사무소임
- 주요 변경사항
  -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 ☞ 지목상관없이 '12년도~'14년도까지 밭농업이용 농지 추가(모든 밭작물(묘목도 가능))
  - 지원단가 상향
  -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 수급면적 제한 폐지등

## □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자료 수집 홍보

- 신청기간 : 2015. 6. 15 ~ 6. 26
- 자료범위 : 오래된 영농기록(영농일지, 사진 등), 농기계, 시설물 등
- 구축공간 : 농업진흥과 홈페이지 내 자료실
- 자료접수 : 산업계 문선옥 063)560-8162
- 조사대상

분야별	조사대상(예시)	비 고
농업관련 기록물	○ 영농일지, 영농사진(모내기, 물대기, 농작물 수확 등) ○ 농업관련 고문서 등	
농업용 기구류	○ 쟁기, 두레박, 오래된 농기구류(풍구, 베틀 등)	
농업시설물	○ 방앗간, 물레방앗간, 헛간, 창고 등	
농업관련 현지 유산	○ 보전가치가 있는 농업관련 유산물 - 다랭이논, 삼양사 염전, 저수지 등	

※ <붙임3> :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 신청서

## □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연중(기 가입자는 가입시점 1년 이내 갱신)
- 지원금액 : 농업인 부담금의 100%를 정액 지원
- 지원대상 : 만 15세~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 세대별 가입인원 제한 없음
  - 상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는 제외
- 협조사항 : 각 마을별 수요자들을 파악하여 조속히 신청토록 홍보

## □ 여름철 농업재해 대비 농업시설 점검 홍보

- 기 간 : 2015. 6. 25. ~ 6. 30.
- 대 상 : 주요 농업시설
- 내 용 : 여름철 재해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등 농업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결속 및 버팀목 설치</li> <li>• 논물고, 밭고랑, 배수로 등 정비, 하천, 배수로의 가설물 제거</li> <li>• 논두렁, 제방손질 및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 비닐피복</li> </ul>
---

<붙임1>

## ‘15년도 쌀소득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 도시 거주 농업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 등록신청 연도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	○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 변경사항 없음  ○ 등록신청 연도 직전 <u>1년 이상</u>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직전 <u>1년 이상</u> 경작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
○ 신규진입 요건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  ○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u>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u> 경작  ○ 지급대상 농지에서 <u>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u> 농산물 판매액 1.2백만원 이상	○ '신규진입' 요건 완화로 대상자 확대 및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 제고
○ 승계 대상 및 범위	○ (사유) 사망(녀사 포함) 승계만 인정  ○ (요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2년 이상 주소 동일한 농업인	○ <u>고령중환 등 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u> 추가  ○ <u>직계비속의 배우자</u> 추가, <u>1년 이상</u> 주소 동일한 농업인	○ 승계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승계 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지급상한면적	○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 지급상한면적 - 개인 : 30ha - 법인 : 50ha  <u>단,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u>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지급상한면적 상향으로 영농규모화 유도
○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 건당 10만원, 1인 연간 최대 100만원	○ 건당 <u>50만원</u> , 1인 연간 최대 <u>200만원</u>	○ 포상금 수준 현실화로 신고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유도
○ 신청서류 제출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생략	○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의 편의 제고
○ 신청시기	○ '14.2.1 ~ 6.15	○ '15.3.2 ~ 7.10	○ 시스템 정비

<붙임2> < '15년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밭고정직불제 도입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현행 제도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농업고정직불제도 추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12 제정)에 따른 제도 시행
지원대상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 지목이 밭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밭</li> <li>- 지목과 상관없이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에 이용되는 논</li> </ul>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추가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대상농지 확대
농촌 외의 거주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신규 진입요건 완화
지원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재배 26개 품목</li> <li>-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li> </ul>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휴경, 시설면적 포함) 추가	밭고정직불제 도입으로 지원품목 확대
지원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li> <li>-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40만원/h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고정 : 25만원/ha</li> <li>- 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ha(밭고정 25만원/ha 포함)</li> <li>-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만원/ha</li> </ul>	밭고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원 품목과 차별화, 품목별 소득, 쌀관세화에 따른 여건 등을 고려
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기준	쌀고정직불금 수급면적에 따른 밭농업직불금(26개 품목) 수급면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ha이상 8ha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ha</li> <li>- 8ha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ha</li> </ul>	폐지	밭고정직불제 시행과 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급기준 완화

구 분	현 행(2014)	변 경(2015)	변경 사유
발농업보조금과 타 보조금 중복 지급 제한 농지	발농업보조금(발재배 26개 품목) 지급 제외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발농업보조금 지급 제외 농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논재배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지급대상 농지 -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발고정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는 중복 가능	발고정직불제 도입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부 중복지급 제한 대상 농지 조정
발농업보조금 등록신청 기간 등	등록신청 - 동계작물 : 2. 1.~3.21. - 하계작물 : 2. 1.~6.15. 이행점검 - 동계작물 : 4. 1.~6.15. - 하계작물 : 7. 1.~9.30.	등록신청 - 동계작물 : 3. 2.~3.31. - 하계작물 : 3. 2.~7.10. 이행점검 - 동계작물 : 4.13.~6.15. - 하계작물 : 7. 1.~9.30.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일제갱신 종료
이행점검 표본 선정	- 발재배 26개 품목 : 30% 이상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이상	- 발고정 : 50%이상 - 발재배 26개 품목 : 30% 이상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이상	발고정 추가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	발고정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건당 50만원, 1인 연간 최대 200만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직불제 상담 콜센터(1670-8002) 업무 수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제 민원상담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

〈붙임3〉 (별지 1호 서식)

농업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신청서

성명		주소		연락처 (H.P)	
자료유형	① 영농현장 보전지역( 읍면 리 번지)				
	② 영농기록(사진, 영농일지 등)				
	③ 오래된 농기계				
	④ 기타 보전가치가 있는 농경문화 유산(정미소, 기타 등)				

상기 본인은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며,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6.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 별지 제2호 서식

고창군수 귀하

(별지 2호 서식)

사진파일 1

사진파일 2

○ 제 출 자 :

○ 보관장소 :

○ 자료유형 :

○ 생산년도 :